



OER(Open Educational Resources)을 위한 저작권 관리 방안

2010. 3. 26.

윤태영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Contents

1 인용의 의의

2 저작권법 제28조의 해석

3 인용 가이드라인

Contents

1 인용의 의의

2 저작권법 제28조의 해석

3 인용 가이드라인

1. 인용의 의의

〈저작권법 규정 체계〉

◆ 저작권법 제25조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OER과 같이 교육기관 및 교육지원기관이 수업자료를 외부에 공개하는 경우

저작권법의 해석상 ‘수업 또는 지원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함

- 따라서 많은 경우 강의공개를 꺼리게 되고,
- 저작권자의 부당한 요구도 있게 되고,
- 이는 궁극적으로 온라인을 통한 교육 개선에도 악영향을 주게 됨.

1. 인용의 의의

〈국내 강의 콘텐츠의 인용례〉

◆ 국외 강의자료

교수들의 오프라인 강의만을 녹화하여 탑재한 것이므로 저작권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적음

◆ 국내 강의자료

1. 다양한 애니메이션으로 구성된 강의 : 목소리, 애니메이션 이미지, 음악 모두에 저작권 문제 제기
2.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음악과 배경화면을 제시 : 도입 부분의 음악과 화면의 저작권 침해 문제 제기
3. 강의 도중 파워포인트 화면에 다양한 저작물 제시: 시각 저작물 등의 게시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 제기
4. 단순히 파워포인트 문서만 제시-출처표시의무 불이행시의 문서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 제기

1. 인용의 의의

〈OER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규정〉

- ◆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저작권법 조문 중 하나:

저작권법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 만약 어떤 저작물의 이용이 정당한 인용에 해당하게 되면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 없음
- 따라서 강의자료를 외부에 공개하더라도 그 강의에 사용된 내용이 저작권법 제28조에서 말하는 인용에 해당하게 되면 저작권 위반으로 되지 않음

1. 인용의 의의

〈인용의 의의〉

- ◆ 타인의 저작물을 그 표현 그대로 끌어다 쓰는 것임
- ◆ 인용을 하면서 수정이나 변경을 하였다 하더라도 인용되는 저작물의 기본적 동일성에 변함이 없고 그 표현의 본질적 특성을 알 수 있으면 인용으로 됨
- ◆ 인용은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이지만, 보통 새로운 문화발전은 기존의 저작물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으로 허락한 것임
- ◆ 인용되는 저작물은 어문저작물뿐만 아니라 영화, 라디오 방송, TV프로그램 등 여러 저작물 형태에서도 인정됨
- ◆ OER에서 저작물을 복제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제28조의 요건에 부합한다면 저작권 침해로 되지 않음
- ◆ 인용은 특히 저작권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크므로 법이 특별히 그 허용요건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지만, 그 요건이 매우 추상적이고 해석상 명백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Contents

1 인용의 의의

2 저작권법 제28조의 해석

3 인용 가이드라인

2. 제28조의 해석

〈인용의 요건〉

- ① 공표된 저작물
- ②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한 인용일 것
- ③ 정당한 범위 내일 것
- ④ 목적과 방법이 공정한 관행과 합치될 것

1. 공표된 저작물

예: 토플 시험문제 사건

2.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한 인용일 것

예: 신동엽의 있다!없다! 프로그램 사건

2. 제28조의 해석

〈우리나라 학설이 제시하고 있는 판단기준〉

◆ 추상적 2가지 요건

3. 정당성:

그것이 꼭 필요하다는 ‘필연성’ 이 있어야 하고, 인용한 저작물이 주가 되고 인용된 저작물이 종이가 되는 이른바 ‘주종관계성’ 이 있어야 하며, ‘필요 최소한도의 인용’ 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함.

4. 공정관행합치성:

궁극적 판단은 건전한 사회적 통념에 따르되, 인용의 목적과 방법이 저작물의 성질에 비추어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여야 함. 예컨대 어문저작물의 경우 인용문을 괄호로 표시하는 등 인용되는 저작물이 어디에 인용되는지를 명료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함.

→ 학설의 입장은 일본의 전통적 견해에 최근의 미국의 경향을 결합한 것으로 보여짐. 다만 여전히 추상적이므로 결국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마다 법원에 맡기고 있음

2. 제28조의 해석

〈우리 판례의 입장〉

◆ 기본입장

“저작권법 제25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제28조의 해석

〈우리 판례의 입장〉

- ◆ **썸네일 이미지 사건**(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7793 판결)
 - 검색서비스의 한 형태로서 인터넷상에 공개된 이미지 자료들을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하면서 타인의 저작물인 이미지를 이른바 ‘썸네일 이미지’로 축소하여 게재하고 원래의 이미지가 있는 사이트로 링크를 걸어 둔 것이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가 다투어진 사건
 - 공정한 관행에 합치된 인용으로 봄

- ◆ **러브레터 사건**(서울중앙지법 2004. 3. 18.자 2004카합344 결정)
 - 일본 영화 ‘러브레터’의 주요장면 중 일부를 ‘해피 에로 크리스마스’에 30초가량 무단으로 삽입하여 상영하고, 이를 비디오와 DVD로 제작·판매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침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사건
 - 공정한 관행에 합치된 인용으로 봄

2. 제28조의 해석

〈우리 판례의 입장〉

◆ 대학입학 본고사 입시문제 사건(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 대학입학 본고사의 입시문제를 대학입시용 문제집에 실은 것을 각 대학 총장들이 저작권 위반을 이유로 고소한 사건. 위 사건에서 피고인은 국어, 논술, 영어, 수학 등의 문제집에 위 각 대학의 국어, 논술, 영어, 수학 등의 본고사 문제 전부를 인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인용저작물은 대학진학지도라는 교육목적을 위한 것이고 또 위 문제집에서 차지하는 위 각 대학의 본고사 문제의 비율이 국어 9.7%, 논술 2.8%, 영어 6.9%, 수학 I 9.9%, 수학 II 9.7%에 불과하므로, 저작권법 제25조가 정하는 공표된 저작물의 정당한 사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함.

→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2. 제28조의 해석

〈우리 판례의 입장〉

◆ **적법한 인용으로 본 사례**

1. ‘썸네일 이미지’ 사건
2. 영화 ‘러브레터’ 사건
3.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사건
4. ‘김우중, 신화는 없다’ 사건 등

◆ **적법하지 않은 인용으로 본 사례**

1. ‘대학 입시용 문제집’ 사건
2. ‘누드 사진 게재’ 사건
3. ‘한국어능력시험용 문제집’ 사건
4. ‘소설마당’ 사건
5. ‘교과서 삽화 사진’ 사건 등

2. 제28조의 해석

<정리>

1. 우리 판례는 대체로 문제된 사건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저작권 위반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2. 따라서 인용에 관한 절대적 기준이 없으며 서로 상반되는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함
 - 러브레터 사건에서의 110여분 중 30초의 분량,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사건에서의 854면 중 약 10면 정도: 적법한 인용으로 판단함
 - 누드사진 게재 사건에서의 3분의 1 정도, 소설마당 사건에서의 7권 중 6권, 이랜드 사람 사건에서의 3분의 1 정도: 적법한 인용이 아니라고 판단함
3. 양적 기준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질적 판단이 중요
 - 김우중 신화는 없다 사건의 302면 중 33면: 적법한 인용
 - SBS 방송 사건에서의 3분, 한국어 능력시험용 문제집 사건에서의 1169쪽 중 66쪽: 저작권 침해로 판단

Contents

1

인용의 의의

2

저작권법 제28조의 해석

3

인용 가이드라인

3. 인용 가이드라인

〈저작권 기준의 구체적 정립〉

- ◆ 국내 및 해외 기준을 고려한 구체적 인용기준의 정립 필요
 - 저작권 문제는 국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국경을 초월한 문제로서 주요국의 상황을 고려한 인용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 ◆ 주요기준
 - ① 저작물 이용의 필요성
 - ② 주종관계
 - ③ 잠재적 가치 및 시장에 주는 영향
 - ④ 인용된 분량 및 인용된 부분의 저작물에서의 중요도
 - ⑤ 원저작물의 성질
 - ⑥ 동일성 유지
 - ⑦ 인용의 목적(특히 각 저작물이 상업적 이용인지 여부)
 - ⑧ 구별용이성과 출처표시

3. 인용 가이드라인

〈저작권 기준의 구체적 정립〉

1. 저작물의 인용이 반드시 필요한가?

- ◆ 인용된 저작물이 있어야만 설명하는 내용에 대한 독자의 이해가 현저하게 용이하게 되는 반면, 그 저작물을 인용하지 않으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야 함.
 - ◆ 인용된 저작물 이외에 다른 저작물로 쉽게 대체 가능한 경우에는 이 요건에 어긋난다고 봄(비대체성).
 - ◆ 인용된 저작물이 보충적 의미를 가져야지 단지 장식적인 의미라면 인용요건에서 벗어남.
- ⇒ 미술작품을 설명하면서 해당 그림을 보여주거나 음악 작품을 설명하면서 해당 음악을 들려주는 것은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나, 이와 관계없이 강의 동영상 초기화면에 그림이나 음악을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정한 관행에 합치된다고 볼 수 없음.

3. 인용 가이드라인

〈저작권 기준의 구체적 정립〉

2. 인용하는 저작물이 주된 것이고, 인용되는 저작물이 종된 것인가?

- ◆ 단순한 양적 판단뿐만 아니라 질적 판단도 중요하여, 인용된 저작물의 가치가 제작한 이러닝 콘텐츠보다 높은 존재가치를 가지는 경우에는 적법한 인용이라고 하기 어려움.
- ➔ 인용된 저작물에 단순히 해설을 붙이는 것과 같은 형태만으로 콘텐츠가 제작되었다거나, 자신이 창작한 부분만으로는 독립하여 저작물로서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음.

3. 인용 가이드라인

〈저작권 기준의 구체적 정립〉

3. 인용된 저작물의 잠재적 가치 및 시장에 주는 영향이 있는가?

- ◆ 인용한 저작물이 인용된 저작물의 시장수요에 명백할 정도로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적법한 인용으로 될 수 없음
 - ◆ 특히 이러닝 콘텐츠에 있어서는 이 기준이 중요한데, 전통적인 교실에서는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미칠 잠재적 시장가치만 판단하면 되나 **OER** 등에서는 교육대상자가 광범위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임.
- ➔ 이러닝 콘텐츠로 인하여 인용된 저작물의 시장수요가 현저히 감소된다거나 이러닝 콘텐츠의 수요 이유가 인용된 저작물 때문이라면 저작권 침해로 됨.

3. 인용 가이드라인

〈저작권 기준의 구체적 정립〉

4. 인용된 분량과 인용된 부분의 중요도는 어떠한가?

- ◆ 인용된 부분은 인용된 저작물의 일부이어야 하며 그 비율은 인용의 목적상 정당한 범위 내에 그쳐야 함. 즉 인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을 피인용저작물로부터 추출하여 인용하여야 함.
 - ◆ 허용된 분량이 단순히 사용 글자수나 사용 퍼센트와 같은 수학적 계산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인용된 부분이 그 저작물의 가장 흥미있고 가치있는 부분인지 여부가 중요함.
- 짧은 단문이나 시, 미술작품 등은 성질상 전부인용이 가능함. 그 외의 경우에는 보통 인용되는 부분이 **10%**를 넘는 경우 적법 인용으로 보기 어려움. 비록 방대한 분량의 저작물의 단지 일부만을 이용하였어도 그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한다면 적법한 인용으로 되지 않을 수 있음.



3. 인용 가이드라인

〈저작권 기준의 구체적 정립〉

5. 저작물의 성질은?

- ◆ 인용되는 저작물이 정보전달을 위한 작품일 경우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는 인용이 될 여지가 크지만,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작품인 경우 그 이용이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는 인용이 되기 어려움.
- ➔ 음악, 영화, 단편 소설 등과 달리 특정 정보나 사실을 전달하는 작품의 경우에는 사회적으로도 널리 유포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므로 그만큼 적법 인용으로 될 여지가 큼.

3. 인용 가이드라인

〈저작권 기준의 구체적 정립〉

6. 동일성을 유지하였는가?

- ◆ 인용된 저작물은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되는 것이 원칙임.
 - ◆ 저작물의 개변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저작권법 제13조)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데, 저작물의 인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임.
- 인용되는 저작물이 해외 저작물인 경우에는 한국어로 번역하여 인용하는 것은 인정되는데, 다만 이 경우에는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여야 함
- 미국의 예에서 보듯, 원저작물을 그 통상의 목적이나 방법과 다른 형태로 이용하여 원저작물에 없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사회에 가져오는 행위는 공정인용으로 되는 데에 유리하게 작용

3. 인용 가이드라인

〈저작권 기준의 구체적 정립〉

7. 인용의 목적이 비영리적인가?

- ◆ 영리적 목적이 아니라 비영리적 교육목적을 위하여 다른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적법 인용으로 될 수 있는 여지가 크지만, 교육적 목적이라고 해서 다른 저작물의 이용이 정당화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여야 함.
- ➔ 만약 온라인 교육과정을 다른 대학에 팔려는 목적에서 이러닝 콘텐츠 제작을 하는 경우에는 영리적 성질이 있다고 보아 인용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될 여지가 있음

3. 인용 가이드라인

〈저작권 기준의 구체적 정립〉

8. 인용되는 부분의 구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출처를 표시하였는가?

- ◆ 자신의 콘텐츠에서 피인용된 저작물이 명료하게 구별 가능하여야 하는데, 괄호 등 특별한 표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명료하게 구별 가능하다면 방법은 문제가 되지 않음.
- ◆ 인용부분에는 각주 등 별도의 표시를 하여 인용 부분이 자신의 저작물이 아니라 타인의 저작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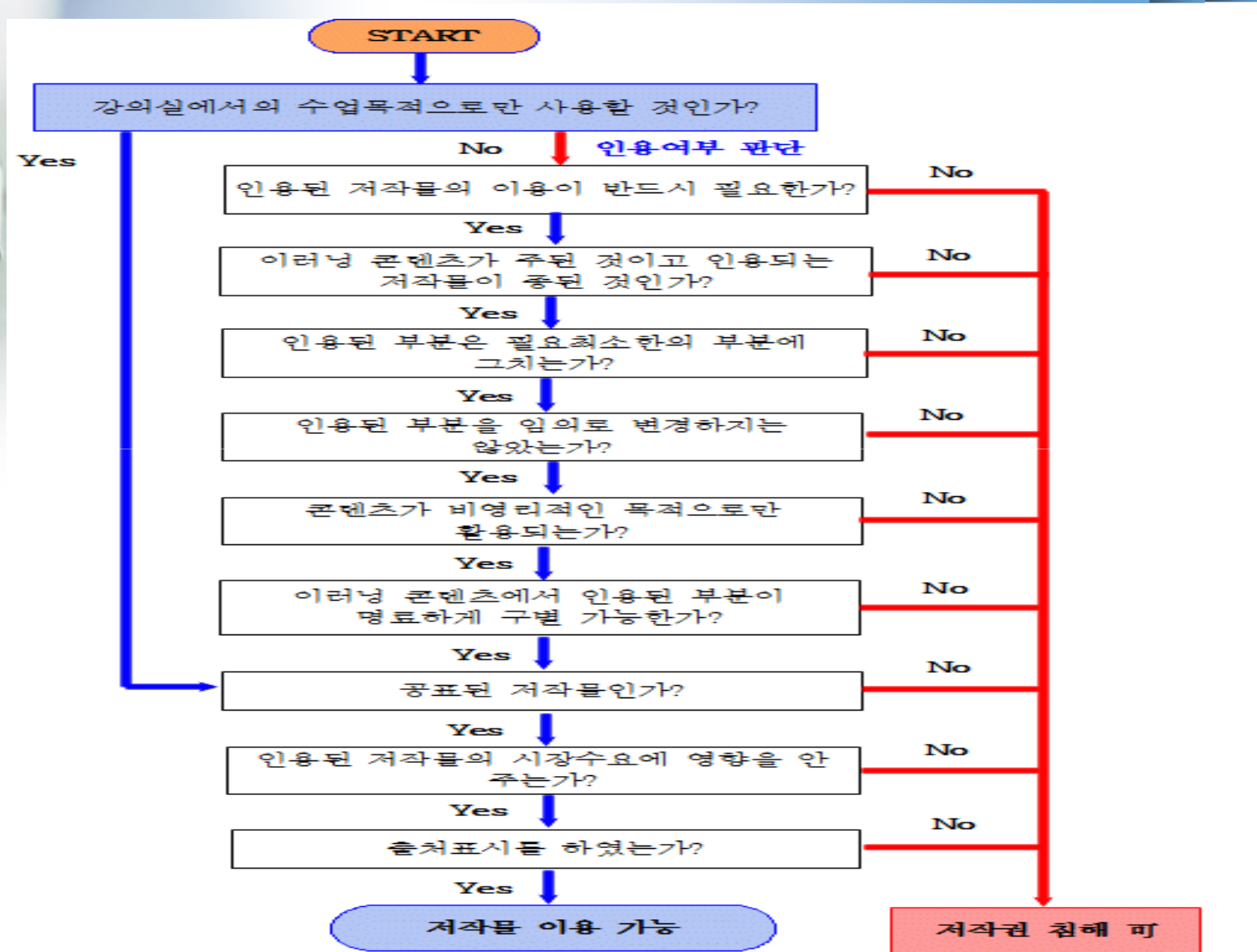
➔ 각 저작물의 자체기준에 따르되,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어문저작물: 저자명, 작품의 제호, 서적명 또는 잡지명과 권호, 페이지, 출판사, 발행연도 등을 기재

웹페이지: 저자, 제호, **URL**, 열람일시 등을 기재

방송프로그램: 제작자, 작품명, 방송일시 등을 기재

3. 인용 가이드라인



3. 인용 가이드라인

〈국내 강의자료의 평가〉

- ◆ 다양한 애니메이션으로 구성된 강의
 - 의미를 전달하는데 애니메이션이 효과적이기는 하나 굳이 애니메이션으로 할 필요는 없으므로 필요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따라서 모든 인용된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으면 안됨.
- ◆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음악과 배경화면을 제시
 - 장식에 불과하므로 정당한 인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로 됨.
- ◆ 강의 도중 파워포인트 화면에 다양한 저작물 제시
 - 미술관련 강의에서 설명을 위하여 관련 미술작품을 제시한 것은 적절한 인용으로 판단됨.
 - 영어회화 관련 강의에서 설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그 예로서 영화 등 동영상을 잠깐 보여주는 것은 적절한 인용으로 보이나, 많은 부분을 모두 보여주는 것은 적절한 인용이 되지 않을 소지가 큼.
- ◆ 단순히 파워포인트 문서만 제시
 - 출처표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감사합니다.